

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[별표 5] <개정 2025. 10. 1.>

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·운영·인력기준(제27조의2 관련)

1. 설치기준

가. 입지조건

학대피해아동쉼터는 보건·위생·급수·안전·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, 시설 50미터 주위에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(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및 같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는 제외한다)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.

나.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남아전용 또는 여아전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.

다. 구조 및 설비

- 1)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해당 지역 내에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이 없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- 2) 주택형 숙사는 아동용 방 2개, 직원용 방 1개, 심리치료용 방 1개 등 총 4개 이상의 방을 갖추어야 한다.
- 3) 심리치료용 방에는 놀이치료·미술치료·음악치료 및 심리상담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4) 그 밖에 주택형 숙사 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.

2. 운영기준

가.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아동의 정원은 8명 미만으로 한다.

나.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을 준용한다.

다. 그 밖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성별, 연령, 상담·심리검사·가정환경조사 결과 등에 따른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3. 종사자의 배치기준

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 1명, 보육사 4명,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등 총 6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.

4. 종사자의 자격기준

가.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- 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

람

- 2)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3)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4)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·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
- 5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6)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7) 유치원,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8) 직업훈련교사, 간호사,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나.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보육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- 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
- 2)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
- 3) 유치원,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

다.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- 1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
- 2)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
- 3) 심리상담 등의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